

3 보건진료센터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호서대학교 보건진료센터(이하 “진료센터”라 한다)의 운영과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진료센터는 본 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유지와 질병예방 등 보건관리에 기여한다.

제3조 (센터장) ① 보건진료센터에 센터장을 둔다.

② 센터장은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보하거나 또는 본 대학교 지정병원의사를 총장이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 (직원) ① 진료센터에 의료기사와 간호사를 둘 수 있다.

② 의료기사와 간호사는 각각 관계 법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제5조 (업무) 진료센터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

1.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1차 진료
2.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
3. 각종 의료기기, 의약품의 구입 및 관리
4. 기타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운영위원회) ① 진료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진료센터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제7조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2. 시설에 관한 사항
3. 기타 보건진료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